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967

발의연월일: 2021. 5. 7.

발 의 자:김선교·정진석·안병길

박대수 · 김예지 · 이철규

김석기 • 윤창현 • 권성동

구자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등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며, 행정관청에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(이하 "관리선"이라 한다)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여 관리선의 용도로 만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지위 승계의 신고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해석 상의 논란이 있음.

만약 관리선의 용도로 임차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지위 승계 신고의 무를 부과하게 될 경우 해당 어선을 원래의 어업허가 목적으로 사용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,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 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됨.

이에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여 관리선으로 사용하려는 경

우에는 지위 승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44조제1항 전단). 법률 제 호

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1항 전단 중 "경우는"을 "경우와 제27조제3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여 관리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는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적용례) 제44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관리선의 용 도로 임차한 자에게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4조(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	제44조(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
위 승계) ① 제41조 및 제42조	위 승계) ①
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	
•어구 또는 시설물(이하 이	
조에서 "어선등"이라 한다)을	
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	
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	
자(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	
인 경우에는 합병·분할 후 존	
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)는 그	
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	
승계한다(상속의 경우 상속인	
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<u>경우</u>	<u>경우</u>
<u>는</u> 제외한다). 이 경우 종전에	와 제27조제3항에 따라 어업허
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	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여 관
그 효력을 잃는다(임차의 경우	리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는
에는 임차기간에 한정한다).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